

인터넷 청약 방법 안내

인터넷 청약방법 안내

OREB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접수일 이전에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니 신청자격에 대한 검증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발급(반드시 청약 전 미리 준비하세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가입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 또는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인증서 발급

| 인터넷 청약 신청

1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2 | APT 청약 신청 클릭(APT 특별공급/1순위 탭 선택)

3 | 청약신청하기 클릭

4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5 | 주택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6 |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 조회

7 |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거주지, 선정기준, 가점항목 확인)

8 | 연락처 등 입력 및 청약신청 내역 확인

9 | 청약신청 내역 확인(청약신청 미완료 상태)

10 | 청약자격 조회 청약완료

※ 입주자모집공고를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모집공고 단지 청약연습' 또는 '청약가상체험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가상으로 미리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된 청약(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여부 청약제한사실 등 청약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청약 신청내역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구분	이용시간 (평일기준, 주말/공휴일 이용불가)	이용일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취소	09:00 ~ 17:30	모집공고일 익일 ~ 청약신청일 전일까지
공고단지 청약연습내역 조회	09:00 ~ 21:30	신청일로부터 2주일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09:00 ~ 17:30	영업일

OREB 한국부동산원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 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



행정정보
자동조회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 자격 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 사실)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세대구성원 동의」의 경우 세대원 각자 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세대원 인증이 필요)



특별공급 공통 (1/2)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신청 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 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p> <p>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준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기준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준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준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 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준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준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2025.06.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조항	신청 유형	내용	비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무순위 청약, 무주택 거주자 공급 2025.02.1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서류제출 추가 요구)	가점제, 노부모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 수 가점 시 위장전입 방지 -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 약국 등) 추가 확인 -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 및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1년간)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시행일 25.06.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무순위 청약, 무주택 거주자 공급 2025.02.11 (무주택 한정+거주자 공급)	무순위 청약, 무주택 거주자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1) 무주택자 한정 2) 거주지역 요건(지자체 재량, 시장 상황 고려 탄력적으로 부과) 	시행일 25.06.10.

특별공급 공통 (2/2)

■ 특별공급 사항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 colspan="2">처리방법</th></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 colspan="2">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 <td rowspan="2">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어 후당첨 무효 처리 시,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계좌부활신청서 작성 세대에 한해 무효 처리가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판명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생애최초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각 청약통장으로 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th><th>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시</th><th>대전광역시</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 rowspan="2">84㎡A · 84㎡B</td><td>200만원</td><td>25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2㎡ · 118㎡</td><td>400만원</td><td>700만원</td></tr> <tr> <td>모든 면적</td><td>전 타입</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r> </tbody> </table>			구분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	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시	대전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84㎡A · 84㎡B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2㎡ · 118㎡	4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전 타입	500만원	1,000만원
구분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	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시	대전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84㎡A · 84㎡B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2㎡ · 118㎡	4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전 타입	500만원	1,0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p>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구분	추천기관	관련법규 및 기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필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필요
	장애인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필요없음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당첨자 선정방법	중소기업 근로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 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① 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② 배점 			
당첨자 선정방법	배점 항목	총 배점	배점 기준	비고
	(1) 미성년 자녀수	40	기준	점수
			4명 이상	40
			3명	35
			2명	25
	(2) 영유아 자녀수	15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비고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1/2)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 수 → ⑤ 추첨 ① 소득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 <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 <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 <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 <td>5단계</td><td>추첨공급</td><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순위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 <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2/2)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자격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자격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table border="1"> <thead> <tr> <th>소득구분</th> <th>비율</th> <th colspan="6">소득금액</th> </tr> <tr> <th></th> <th></th>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td> <td>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00% 이하</td> <td>~7,205,312원</td> <td>~8,578,088원</td> <td>~9,031,048원</td> <td>~9,733,086원</td> <td>~10,435,124원</td> <td>~11,137,162원</td> </tr> <tr>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00% 초과 120% 이하</td> <td>~8,646,374원</td> <td>~10,293,706원</td> <td>~10,837,258원</td> <td>~11,679,703원</td> <td>~12,522,149원</td> <td>~13,364,594원</td> </tr> <tr> <td rowspan="4">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td> <td>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00% 초과 140% 이하</td> <td>7,205,313원~ 10,087,437원</td> <td>8,578,089원~ 12,009,323원</td> <td>9,031,049원~ 12,643,467원</td> <td>9,733,087원~ 13,626,320원</td> <td>10,435,125원~ 14,609,174원</td> <td>11,137,163원~ 15,592,027원</td> </tr> <tr>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20% 초과 160% 이하</td> <td>8,646,375원~ 11,528,499원</td> <td>10,293,707원~ 13,724,941원</td> <td>10,837,259원~ 14,449,677원</td> <td>11,679,704원~ 15,572,938원</td> <td>12,522,150원~ 16,696,198원</td> <td>13,364,595원~ 17,819,459원</td> </tr> <tr> <td rowspan="3">추첨공급</td> <td>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td> <td>10,087,438원~</td> <td>12,009,324원~</td> <td>12,643,468원~</td> <td>13,626,321원~</td> <td>14,609,175원~</td> <td>15,592,028원~</td> </tr> <tr>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td> <td>11,528,500원~</td> <td>13,724,942원~</td> <td>14,449,678원~</td> <td>15,572,939원~</td> <td>16,696,199원~</td> <td>17,819,460원~</td> </tr> </tbody> </table>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보유 기준 																																																																											
구분	자산 보유 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th>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 colspan="2">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h>주택</th> <th>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h> <th colspan="2"></th> <th colspan="2">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h> </tr> </thead> <tbody> <tr> <td></td> <td>단독주택</td> <td colspan="2"></td> <td colspan="2">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 colspan="2"></td> <td colspan="2">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 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① 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생애최초 특별공급 (1/2)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을 배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 해당 없음)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① 소득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 <table border="1"> <tr>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 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td></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table border="1"> <tr>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 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 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table border="1"> <tr>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 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 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 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2/2)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table border="1"> <thead> <tr> <th>소득구분</th> <th>비율</th> <th colspan="6">소득금액</th> </tr> <tr> <th></th> <th></th>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td> <td>130% 이하</td> <td>~9,366,906원</td> <td>~11,151,514원</td> <td>~11,740,362원</td> <td>~12,653,012원</td> <td>~13,565,661원</td> <td>~14,478,311원</td> </tr> <tr> <td>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td> <td>130% 초과 160% 이하</td> <td>9,366,907원~ 11,528,499원</td> <td>11,151,515원~ 13,724,941원</td> <td>11,740,363원~ 14,449,677원</td> <td>12,653,013원~ 15,572,938원</td> <td>13,565,662원~ 16,696,198원</td> <td>14,478,312원~ 17,819,459원</td> </tr> <tr> <td rowspan="3">추첨 공급</td> <td>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td> <td>11,528,500원~</td> <td>13,724,942원~</td> <td>14,449,678원~</td> <td>15,572,939원~</td> <td>16,696,199원~</td> <td>17,819,460원~</td> </tr> <tr> <td rowspan="4">1인 가구</td> <td>160% 이하</td> <td>~11,528,499원</td> <td>~13,724,941원</td> <td>~14,449,677원</td> <td>~15,572,938원</td> <td>~16,696,198원</td> <td>~17,819,459원</td> </tr> <tr> <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td> <td>11,528,500원~</td> <td>13,724,942원~</td> <td>14,449,678원~</td> <td>15,572,939원~</td> <td>16,696,199원~</td> <td>17,819,460원~</td> </tr> </tbody> </table>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 공급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 공급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7">자산 보유 기준 세부내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 <td rowspan="2">3억 3,100만원 이하</td> <td rowspan="2">건축물</td> <td colspan="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d></tr> <tr> <td colspan="7">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h>주택</th> <th>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h> <th>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h> </tr> </thead> <tbody>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td></tr> <tr> <td colspan="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td></tr> <tr> <td>토지</td><td colspan="7"></td></tr> </tbody> </table>							구분	자산 보유 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h>주택</th> <th>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h> <th>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h> </tr> </thead> <tbody>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												
구분	자산 보유 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h>주택</th> <th>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h> <th>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h> </tr> </thead> <tbody>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																																																															

일반공급 (1/2)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 통장 자격 요건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th> <th>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시</th> <th>대전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 rowspan="2">84㎡A · 84㎡B</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2㎡ · 118㎡</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전 타입</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	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시	대전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84㎡A · 84㎡B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2㎡ · 118㎡	4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전 타입	500만원	1,000만원
구 분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	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시	대전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84㎡A · 84㎡B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2㎡ · 118㎡	4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전 타입	500만원	1,0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 지역 → ② 추첨 - 2순위 : ① 지역 → ② 추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②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 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 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④ 추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84㎡A · 84㎡B</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102㎡ · 118㎡</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구 분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 84㎡B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102㎡ · 118㎡	-	100%							
구 분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 84㎡B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102㎡ · 118㎡	-	100%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 (2/2)

■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청약가점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이건만은 꼭!
무주택 기간 [총점 3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p>※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연령 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 기준으로 선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 점수는 “0”점입니다. 	<p>▶ Tip 무주택기간산정은 “만” 나이로 계산 해야 됩니다.</p> <p>▶ 실수 사례 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5년 06월 20일(금) 기준 1995년 06월 20일생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 내용 한국 나이로는 31세로 무주택기간을 “1년 이상(4점)”으로 입력(X) • 실제 점수 실제 나이는 만 30세 무주택기간을 “1년 미만(2점)”으로 입력(O)
부양 가족 수 [총점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 이어야함)로서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됩니다. •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부양가족 산정 <p>부양가족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된 경우(무주택일 경우): 조부, 조모, 부, 모, 장인, 장모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된 경우(무주택일 경우): 조부, 조모, 조부, 조모, 장인, 장모 영제자매 동거인X: 본인(세대주), 자녀(기혼)X, 자녀의 배우자 X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인 경우: 자녀, 손자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된 경우: 자녀(기혼)X, 자녀의 배우자 X 손자 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 (단, 청약자 동일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손자 	<p>▶ Tip 부양가족 산정 시 “청약자 본인은 제외”입니다.</p> <p>▶ 실수 사례 예) A씨의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 내용 A씨는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1명”(10점)으로 입력(X) • 실제 점수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수는 제외 “0명”(5점)으로 입력(O)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수는 본인은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점 1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 가점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